

- 2022년 제1회 - 과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2022년 제1회 과천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10월 14일
과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근거 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 예규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「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 및 「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」

2.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채용 예정분야	직 급	인원	임용기간	주요 담당업무 (직무내용)
정책 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채용일로부터 1년 (주40시간)	○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○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○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※ 임기는 사업의 계속 여부,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)

3. 응시 자격 [판단기준일 : 최종(면접)시험 시행예정일]

가. 공통요건 (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)

- 성별, 거주지 제한 없음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-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-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응시자격 요건

채용예정분야	응시 자격 요건
정책지원관 (일반임기제 7급)	○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 ·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<u>행정, 법무, 예산·회계, 감사, 사회조사, 정책개발·분석, 언론, 시설분야(도시계획, 토목, 건축, 지적, 교통 등)</u> 관련 업무경력

- ※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함
- ※ 학위취득일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의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으로 함
- ※ '경력요건'으로 응시하는 경우, **최종 관련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**
- ※ **경력**은 '경력증명서'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(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은 인정 불가)하며, **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주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, 발급 담당자연락처, 발행기관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**(합격 후 자격 검증 시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)
- ※ 주40시간 미만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기준 : 주40시간에 비례, 환산하여 인정
 - (예시) 근무기간 2020.1.1.~12.31.(주 20시간 근무) 경력증명서 제출 시 '6개월'로 경력 인정

4. 근무조건 및 보수

-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소속 근무부서 운영방침에 따름
- 기본연봉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의함

(기본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63,693천원	<u>45,237천원</u>

※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

○ 기본연봉 외 보수

- 기본연봉 외 급여 :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 등
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기본연봉 외 급여는 임기, 가족사항, 근무지 등 본인여건에 따라 비대상일 수 있음

5. 시험 방법 및 일정

가. 시험 방법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- ▶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)
- ▶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력(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 단체 단순 활동, 강의 등)은 산정 제외
- ▶ 경력요건의 경우,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: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면접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5가지 평정요소를 상(3점)·중(2점)·하(1점)로 종합평가
 - ▶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▶ (불합격 기준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

○ 추가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)

나. 시험 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인성검사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2. 10. 14.(금) ~ 10. 25.(화)	2022. 10. 26.(수) ~ 10. 28.(금)	2022. 11. 9.(수) 전.후	2022. 11. 11.(금) 전.후	2022. 11. 18.(금) 전.후	2022. 11. 25.(금) 전.후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**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**
- 각종 공고는 과천시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gccouncil.go.kr>) 게시판에 게시하며, 상기 일정은 서류 검증 기일 소요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 변경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2. 10. 26.(수) ~ 10. 28.(금)

나. 접 수 처 :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

※ 접수처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3층 의회사무과(의정팀) <우 13806>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(등기)

① 방문접수 (대리접수 가능)

- 접수시간 : 09:00~18:00 (**중식시간 12:00~13:00 제외**)
- **과천시청 1층 열린민원과(10번 창구)에서 「과천시수입증지」구입** 후 응시원서에 부착

② 등기우편 접수

-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**접수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**
- 해당직급 수입증지(응시수수료) 비용만큼 **우편통상환(우체국에서 판매)을 구입하여 동봉**
- 봉투 겉면에 '과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' 문구 표기
-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익일 오후 전화(02-3677-2522)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확인
-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배부함

※ 응시원서 등 소정 양식은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

7. 제출서류

가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 1부 (소정 양식)
 - ▶ 응시수수료 : **7급 7,000원**이며, 시청 1층 열린민원관에서 구입한 증지만 사용 가능
- ② 이력서 1부 (소정 양식)
 - ▶ 이력서 경력란은 제출한 입증서류에 의해 증명 가능한 사항만 기재
- ③ 자기소개서 1부 (소정 양식, 1매 이내)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(소정 양식, 2매 이내)
- ⑤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사본 1부
 - ▶ **당해분야의 근무부서, 재직기간, 담당업무,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,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등)을 반드시 기재**하여 발급
 - ▶ **특히 담당업무는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**
- ⑥ 최종 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 등) 사본 1부
 - ▶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
- ⑦ 자격증면허증 사본 또는 취득증명서 1부
 - ▶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
- ⑧ 주민등록초본 1부 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
-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소정 양식)
- ⑩ 개인정보제공(이용) 동의서 1부 (소정 양식)
-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본인의견서 1부 (소정 양식)
- ⑫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(소정 양식)
 - ▶ 학위요건 응시자인 경우 활용 서식으로 학위증, 최종학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과명칭이 모호하여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

나.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공고문 내용과 배치되는 등 부적합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

- 관련 분야 경력·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하며,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내용 미비 등에 따른 경력·자격 불인정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모든 작성서류(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)는 단면으로 인쇄하고,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※ 양면 인쇄 금지
-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경력증명서 등)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된 한글번역본(원본 지참·확인 후 사본 제출)을 함께 첨부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응시서류 허위 작성·제출 등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공무원 임용 시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-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졸업증명서 등)는 원서접수 당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

8. 기타 유의사항

-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, 응시서류의 누락·미비·기재착오, 자격미비자의 응시, 응시원서 연락처, 전자우편 주소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-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면접시행일 등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공고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, 신원조사, 채용신체검사, 경력·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과천시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gccouncil.go.kr>) 게시판에 게시
-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
 - ※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재교부
- 기타 문의 사항은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 02-3677-2522)로 문의